

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204
------	------

2017. 11. 29.
기 획 경 제 위 원 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10월 31일, 박진형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1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】

- 제11차 기획경제위원회(2017.11.29)상정, 제안설명, 질의 및 답변, 토론, 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박진형 의원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」 발의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」 중 중복 예상되는 조항 삭제

2. 주요내용

-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(제15조부터 제 24조까지)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본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」의 발의에 따라 서울특별시 혁신성장위원회로 산학연정책위원회와 지식재산위원회가 통합되어 지식재산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지식재산위원회 관련 규정과 현황

- 「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」는 지식재산의 창출,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서울시는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, 지식재산 추진계획의 수립, 서울시 지식재산 관련 시책 등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·조정을 수행하는 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 있음(제16조).
- 「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」에 따르면 지식재산위원회는 위원장인 행정1부시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(제17조), 임기만료된 위원들의 경우 추가 위촉을 하지 않아 현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.
(붙임자료에 위원회 명단 참조)

- 「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」는 위원의 임기(제18조), 위원장의 직무(제19조), 회의 소집(제20조), 수당 및 여비(제21조), 자료의 제출 및 그 외의 협력(제22조), 비밀누설의 금지(제23조), 운영세칙(제24조) 등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.

다. 종합의견

- 현재 발의 중인 ‘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’에 따르면 미래혁신기술 진흥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대한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혁신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혁신성장위원회의 기능에 ‘지식재산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’을 규정하고 있음.

제4조(서울특별시혁신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) ① 시장은 미래 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 하기 위하여 시장 직속으로 서울특별시혁신성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의 수립·조정에 관한 사항
2. 과학기술혁신 및 인력육성 등에 관한 사항
3. 미래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
4.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지원사업 및 미래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의 기획·평가·사업규모 등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
5. 산학연 협력체계 및 기반구축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
6. 기술기반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
7. 지식재산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따라서 ‘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’이 제정된다면 지식재산위원회는 혁신성장위원회에 기능적으로 통합되며 「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」에서 지식재산 위원회 관련 규정인 제15조에서 제24조까지 삭제가 필요함.
- 혁신성장위원회를 신설하고 산학연정책위원회와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정책적 수요에 대응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음.
- 하지만 혁신성장위원회가 서울시장이 공동위원장이고 경제진흥본부장,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,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큰 규모의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엽적인 기능까지 모두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(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7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진형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20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10월 31일

발 의 자 : 박진형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제리, 허기회, 유찬종, 김태수,
성중기, 장인홍, 김구현, 이순자,
김용석(서초), 진두생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」 발의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」 중 중복 예상되는 조항 삭제

2. 주요골자

- 가.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(제15조부터 제 24조까지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<삭제>

제16조 <삭제>

제17조 <삭제>

제18조 <삭제>

제19조 <삭제>

제20조 <삭제>

제21조 <삭제>

제22조 <삭제>

제23조 <삭제>

제24조 <삭제>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5조(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식재산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<p><u>제16조(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</u> <u>2. 제7조에 따른 지식재산 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</u> <u>3. 서울시의 지식재산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</u> <u>4. 그 밖에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	<p><u><삭 제></u></p>
<p><u>제17조(위원회의 구성)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<u>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
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
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
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
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
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
2. 공공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
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
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에 관
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
3. 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
는 사람
4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식
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
과장급 이상 공무원

④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
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.

1.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회
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
2.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
3.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

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
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소관업무 담
당과장이 된다.

제18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
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
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
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<삭 제>

제19조(위원장의 직무)① 위원장은 위
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
총괄한다.

<삭 제>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
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
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
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
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
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
무를 대행한다.

제20조(회의)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
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<삭 제>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
소집한다.

1.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2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
구가 있는 경우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
정하는 경우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
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

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은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·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제척된다.

⑤ 위원장 및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·조정
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 작성을 통해 충실히 기록·보존하고,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제21조(수당 및 여비)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지식재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·심의·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2조(자료의 제출 및 그 외의 협력)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

<삭 제>

<삭 제>

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, 지방공공단체, 학교,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, 의견의 표명, 그 외에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.

제23조(비밀누설의 금지) 위원회의 위원인 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부칙

--- 다만,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